

---

# 2016년도 정보공개업무편람

---

2016. 10.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목 차

<b>I. 정보공개제도의 의의</b> .....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1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1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3
<b>II.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b> .....	3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3
2. 정보공개 방법 .....	3
3. 정보공개 청구권자 .....	4
4. 정보공개 대상기관 .....	4
5. 정보공개 원칙 .....	5
<b>III.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b> .....	6
1. 정보공개 청구방법 .....	7
2.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8
3.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	8
4. 정보공개 여부 결정 .....	9
5.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10
6.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11
7. 정보공개 실시 .....	11
8. 정보부존재 처리 .....	12
9. 청구인 확인 .....	12
10. 비용 부과·징수 .....	13
<b>IV. 불복구제 방법</b> .....	14
1. 이의신청 .....	14
2. 행정심판 .....	15
3. 행정소송 .....	15
<b>V. 관련 서식</b> .....	16
<별지 제1호>정보공개 청구서 .....	16
<별지 제2호>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17
<별지 제3호>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18

# I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 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01.04.)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11.)
-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1994.07.0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정
  - 1996.12.31. 공포, 1998.01.01. 시행 :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운영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01.0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11.)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 처리 지연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정(2003.06.24.)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선 국무총리 훈령(제442호)으로 제정
- 정보공개법의 전문개정(2004.01.29. 공포, 2004.07.30. 시행)
  - 이후 11차례 개정
  -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 정보목록 작성 비치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 공개 의무화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및 대상기관 확대 등

## II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당해 공공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2.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법 제2조 제1호)

- 공개 방법(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URL)의 안내
  -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가능

###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4.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제3호)

####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도시철도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금융감독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5.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법 제3조)

○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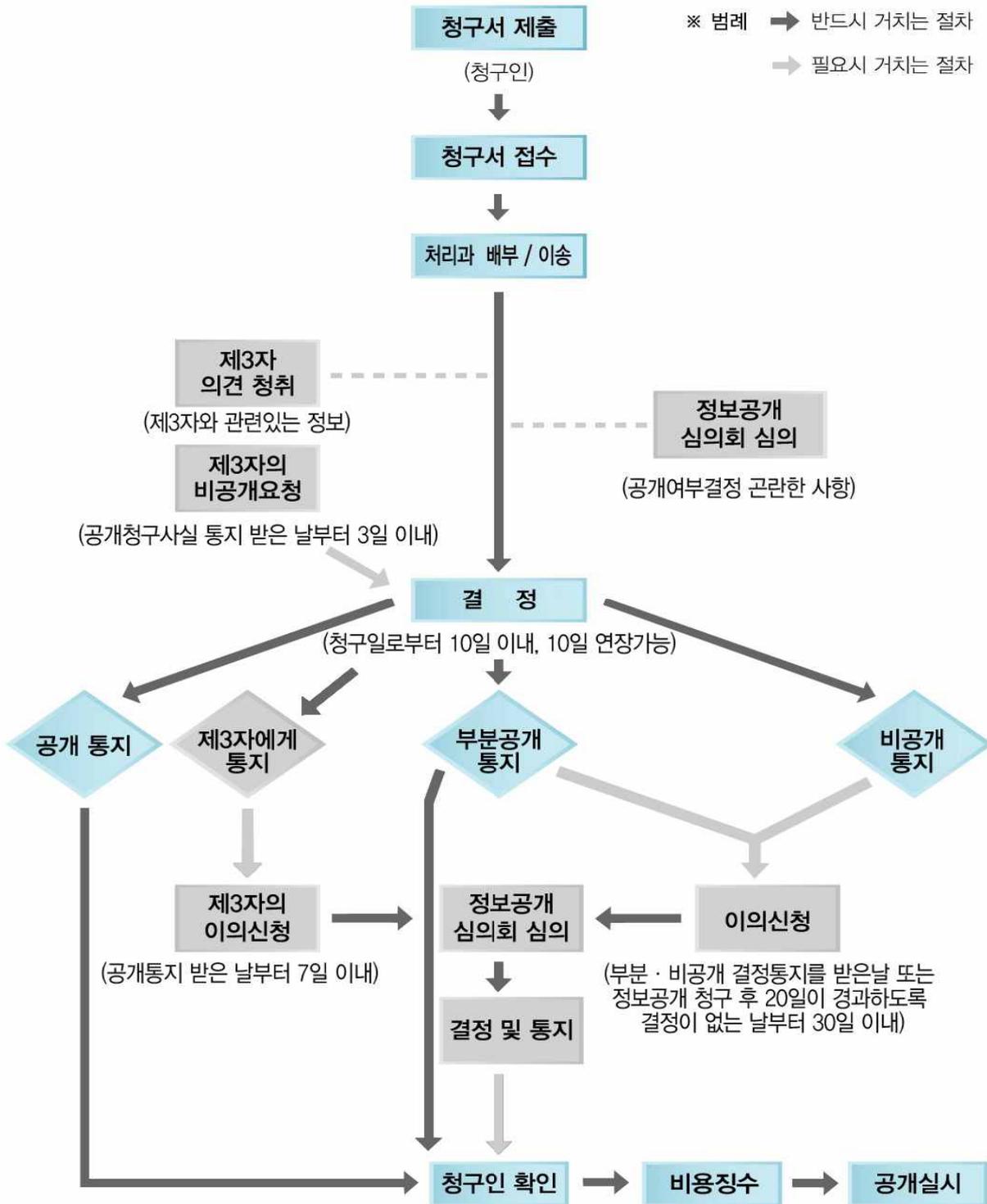
○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상호간의 충돌·모순을 해소)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

### Ⅲ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업무 처리 흐름도



# 1. 정보공개 청구방법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인터넷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http://www.open.go.kr))과 연계하여 운영
  - 방문·우편·팩스 접수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총무재무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 전화번호 : 042-868-9552
  - 팩 스 : 042-861-5800

##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 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 (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0두14800)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대법원 2003두 12707판결)

## 2.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 청구서의 소관부서(처리과) 지정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 (법 제11조 제4항)

###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우편·팩스·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의 경우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 ○ 청구서의 소관부서(처리과) 지정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그 청구 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는 소관부서로 분류
-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 정보공개 책임관이 소관부서 지정

### ○ 소관 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우선적으로 처리

### ○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질의·제안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민원사무로 처리

## 3.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 ○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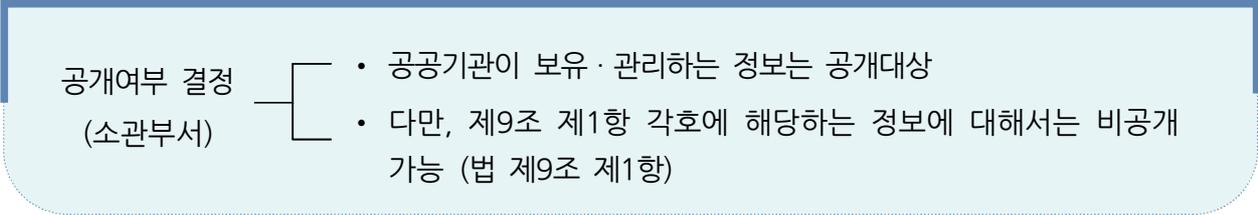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 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취하 가능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 온라인 청구 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직접 제출 및 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구두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 시 향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 4.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소관부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개 대상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기관 또는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 폭주 등의 경우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5.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법 제11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법 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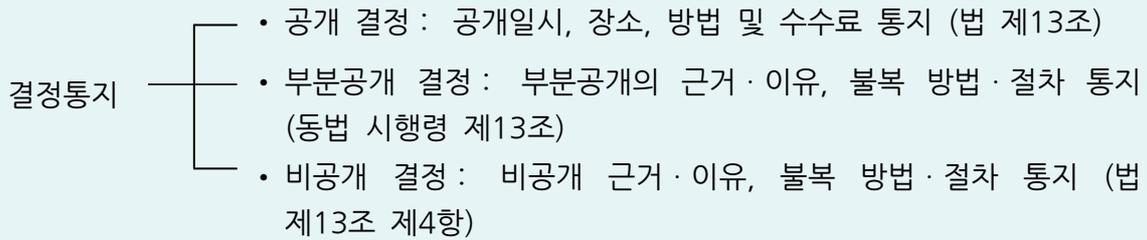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 청구된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대상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6.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공개 결정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납부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결정통지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

###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부분공개·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 및 개별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유를 작성하여 통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 방법 및 절차를 안내

## 7. 정보공개 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수수료
- 정보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또는 시청, 사본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청구인 동의 시, 일부 가공하여 공개 가능)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

### ○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 가능

※ 부득이한 경우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가능

## 8. 정보부존재 처리

-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7일 이내 처리

## 9. 청구인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15조)
- 본인 확인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본인 확인 절차 불필요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반드시 본인 확인 필요
- 본인 확인 방법
  -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된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 확인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함

## 10. 비용 부과 · 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법 제17조)
-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수수료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우편요금 :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의 보통등기 요금을 적용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 정보공개외의 경우,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 정보의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 IV 불복구제 방법

### 1.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li><li>•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li><li>•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li></ul>
제3자의 이의신청 (법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li><li>•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li></ul>

#### ○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
- 신청기간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법 제18조 제4항)

※ 이의신청 결정 종류 -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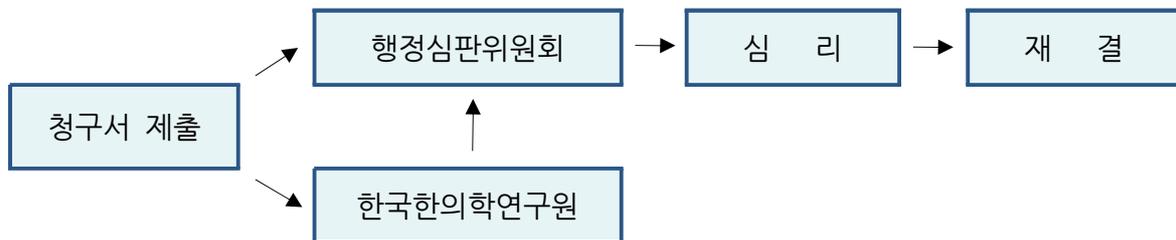
## 2.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 및 제21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행정심판 절차



## 3. 행정소송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 및 제21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

###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 집행정지 신청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

## V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 기타(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수수료	[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귀하

####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한국한의학연구원장

####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감면 사유	<small>※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small>	
구술청취자 (담당직원등)	직급	성명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한 국 한 의 학 연 구 원 장

###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